

세종남부경찰서

제 2026-00990 호

2026. 5. 15.

수신 : 김명호 귀하

제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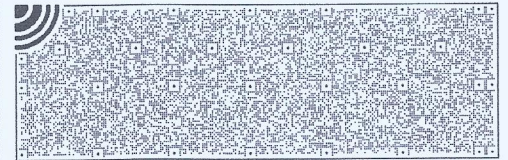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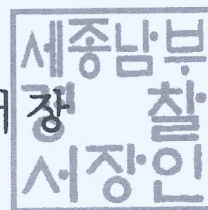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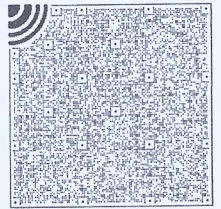
접수일시	2026. 4. 17.	접수번호	2026-003477
죄명	직무유기 등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 (■)		
주요내용	별 지		
담당팀장	지능범죄수사팀 경감 황석민	☎	044-320-8184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세종남부경찰서





【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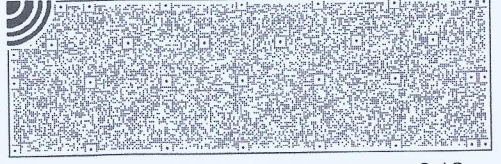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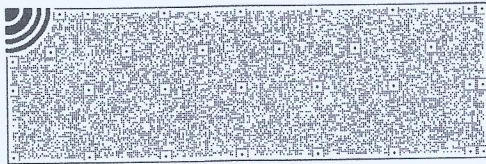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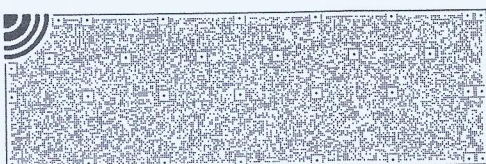
1.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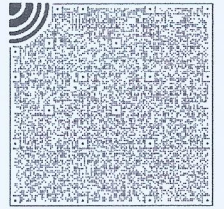
피조사자는 00000 소속 공무원으로서 0000. 0.~0000. 0.경 00 0000 00, 00000 이하 불상지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00000의 주차장 및 불법 건축물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에는 국민신문고 상 연장 사유를 삭제하고 처리기관을 위조하였으며, 해당 민원을 00 000로 이송함으로써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은닉, 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변작.

2. 불입건 이유

-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중략)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아, 피조사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민원은 00000 000 소재 00000의 주차장 및 불법건축물에 관한 것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 등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처리기관이 '00000 00000 00000 00000'에서 '00000 000'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0000'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조사자는 관련 규정 검토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조사자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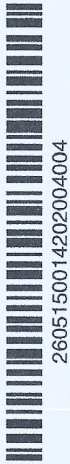
2605150014202003004





못했을지언정 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거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거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을 위작 또는 변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이 명백하다.

○ 입건 전 조사종결 한다.



2605150014202004004

